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2. 9. 16(금) 10:00

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
(푸른미래도시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0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9. 16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9. 16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

### ○ 관련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(예비비),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### ○ 관련서류 : 2021회계연도 결산서(안)

#### 4. 예비비 지출 현황

##### ○ 일반예비비

(단위: 원)

부서명	세부사업	지출결정액	지출액	집행잔액	지출사유
계		350,000,000		350,000,000	
공원녹지과	금천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	350,000,000		350,000,000	코로나19로 여가활동이 제한된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도시농업 가용지 확보

##### ※ 도시농업 가용지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경과

###### 1. 대상지

- 위치 :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73-2
- 면적 : 6,512.00㎡ (1,969.88평, 지목: 임야)
- 토지주 : 송민수 등 8명
- 토지공시지가 : 394,627,200원(60,600원/㎡, 2021년도)

###### 2. 대상지 확보를 위한 경매 결과 : 패찰

###### 3. 미집행액 : 반납 처리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○ 2021회계연도 푸른미래도시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

공원녹지과 1건 3억 5,000만원으로 주말농장 가용지 확보를 위하여 긴급 지출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부지를 확보(경매 패찰)하지 못함 따라 미집행으로 반납함.

○ 다만, 본 안건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을 파악해 볼 때 적극 행정의 절차로 보여지며, 향후 유사 사업에 대응하여 보다 면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- 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-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, 2021. 1. 12.>
- [전문개정 2011. 8. 4.]